

가구화(householding)의 관점으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귀환결정

류 유 선 (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broomgrove@naver.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구화라는 관점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이주과정에서 출산한 자녀의 사회화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적화된 교육과 양육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맥락에서 결정되는 미등록이주아동의 귀환은 이주여성이 이주국에서 만든 가구가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단위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구화는 로컬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가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등록이주여성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불법’이라

는 체류지위를 물려받기 때문에, 출산은 돌봄으로 이어지는 당연한 과정이 아니라 자녀와의 동거 혹은 별거를 결정해야하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미등록이주아동의 귀환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일상 유지 및 세대간 연결성을 위한 가구화 과정이자, ‘불법’이라는 불예측적인 삶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결정된다. 로컬의 맥락에서 가구의 안정화는 수입의 최대화를 위한 노동시간 확보 및 계급상승을 위한 자녀교육의 수월성을 위주로 작동된다. 때문에 자녀의 귀환결정 과정은 가구안정화를 지속하는 노동시간의 확보와 친밀성의 유지, 계급상승을 위한 사회자본의 확보라는 다층적 차원이 고려되는 맥락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 미등록이주아동, 가구, 가구화, 불법, 초국적 가족

I. 문제제기

비공식/공식 국내 이주민 유입역사가 30여년이 되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정주 및 가족결합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가족’¹⁾을 제외한 이주민가족은 ‘불법’으로 분류되고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미등록이주여성은 ‘불법’인 자녀를 출산하자마자 본국으로 보내거나 함께 키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미등록이주여성의 불안한 체류지위는 언어뿐만 아니라 개인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 도덕 및 신념, 문화를 습득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녀의 사회화 장소를 결정하도록 한다. 단속과 추방의 대상인 미등록이주아동의 사회화 장소는 할머니나 형제자매 등 확대가족 공동체가 유지·운영되고 있는 본국으로 상정되었다(박경태, 2001).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 규모는 이주노동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보거나 국가 혹은 세계경제 구조의 일부로 보는 관점을 매개할, 가족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이주에서 가족에 대한 논의는 초국적 가족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초국적 가족’이 본국과 이주국이라는 경계를 기반으로 본국에 남은 자녀와 이주를 떠난 엄마로 재현되면서, 국가주의를 넘으려던 초국주의로써 초국적 가족은 오히려 국가가 유지·강화하려고 했던 가족개념 및 가족 내 여성의 희생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주여성들이 이주과정에서 새롭게 형성한 가족은 비가시화되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뤄진 가족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노동이주에서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주의 여성화’는 현대이주의 특징이 되고 있고(Castles and Miller, 2003), 1990년대 이후부터는 아시아 및 한국에서도 이주의 여성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에도 여성이주의 비율이 44.8%에 달하고 있다²⁾. 양적으로 여성이주자의 수가 증가하고 질적으로 여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개념화 한 ‘이주의 여성화’나 본국의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가족’이라는 분석의 틀로는 이주가 장기화되면서 생애전략을 재구성하는 이주여성의 삶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생애과정에서 결혼 및 출산, 양육 등 재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이주국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사와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생산과 재생산영역을 넘나들고 있고, 이들 가운데 이혼을 하면서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노동을 위해 이주한 여성 가운데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거나 이주노동자와 사실혼 혹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자의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주를 제외한 이주자의 가족, 특히 이들이 한국에서 출산한 아동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미등록이주아동 통계를 시작한 2007년 11월 통계월보(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외국인 22만2893명 가운데 약 4%인, 1만1145명으로 집계되었던 19세미만의 불법체류아동은 2011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2011)에 1만1851명으로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에는 5,424명, 2013년에는 5,261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미등록이주아동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이혜원, 2011 ; 김성천, 2010 ; 설동훈, 2007). NGO단체나 학계는 이들 규모를 대략 2만명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석원정, 2013; 최경옥, 2012). 전 지구적으로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불법이주민이나 이주2세대인 이들 자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가 이주자 개인이 아니라 이주2세대 및 가족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현아, 2009; 민가영, 2009; 이민경·김경근, 2012).

그러나 이주민의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한국 법과 제도³⁾는 이주민의 본국가족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와의 동거도 허락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은 본국 가족과의 별거와 한국의 새로운 가족과의 별거라는 이중의 별거 가족 형태를 강요받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부모와의 분리를 강요받는다. ‘불법’이라는 이주민 가족의 법적 지위는 이들이 별거 가족을 형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가 발표한 201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체류의 국인 1,445,103명 가운데 여성은 648,035명으로 44.8%에 달하고, 2013년통계연보에서도 총 체류의 국인 1,576,034명 가운데 여성이 705,858명으로 44.8%에 이른다.

3) <고용허가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기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이주국의 허용하는 법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재생산을 실천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주국의 정해진 위치에 수동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재생산을 실천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가구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 가구는 결혼과 출생과 같은 공식적이고 제도적 가족보다 개방적인 개념으로 비공식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불법이라는 불예측적인 생활세계에 있는 이주여성 이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지속적인 과정으로써 가구화를 실천하기 위해 자녀의 귀환을 결정하는 맥락을 다층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II. 분석개념

이주와 관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변화에 대해 더글라스(Douglass, 2010a)는 재생산의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들이 ‘전지구적 가구화(global householding)’를 통해 가족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가 말하는 ‘전지구적 가구화’는 국가 내에서 재생산의 어려움에 처한 가족구성원들이 국가 밖에서 재생산의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가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결혼 및 배우자 찾기, 출산 및 입양, 자녀 양육과 투자, 살림 및 재생산, 가구 바깥에서 이뤄지는 생계활동,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노인 돌봄 문제, 은퇴이주(더글라스, 2010a:207)”등 이주를 통해 가구재생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글라스가 말하는 가구는 결혼이나 출생에 기반한 제도적 가족개념이 아니라, 수입과 노동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산을 실천하는 사회적 단위를 지칭한다. 넓은 개념으로써 글로벌 가구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가구들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을 의미한다(김영옥·김현미, 2013). 그러나 글로벌 가구의 재생산은 여전히 국가가 지지하는 국민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계급재생산전략으로써 중국이나 한국, 대만 등 중산층의 자녀유학은 자원을 통한 합법적 통로로 우주인 가족, 기러기 가족 등의 글로벌 가구를 통해 유지되는 초국적 가족이다.

이런 합법적이고 계급적인 글로벌 가구와 다르게 생존회로의 이주노동자들도 초국적 가족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초국적 가족은 남겨진 자녀와 떠난 엄마라는 비정상적인 가족틀로 유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주국에서 본국 자녀를 경제적, 감정적으로 지원하는 원거리 모성을 실천하는 이주여성들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초국적 가족은 가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가족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희생을 내포함으로써, 이주여성을 관리/감독하는 보수적 힘으로 작동하며 정상가족개념을 강화한다며 비판받기도 한다

(Yeoh, Huang, and Lam, 2005). 초국적 가족이나 글로벌 가구는 이미 만들어진 가족을 재생산시킨다는 차원에서 여성은 본국의 자녀 및 다른 구성원과 연결되었고, 오히려 이주과정에서 이들이 새롭게 형성한 가족에 대한 논의는 비가시화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초국적 가족과 글로벌 가구는 불변의 소속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 단위이자, 사회적 재생산 장소인 가족을 유지하려는 자본주의와 국민국가의 가족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분석틀로 유의미할 수 있다.

한편 가족논의와 다른 방향에서, 미등록이주민의 무국적 혹은 미등록 자녀에 대한 논의는 최근 인권적 차원과 가족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인권적 차원의 연구대상은 대부분 ‘불법’이주민과 그들이 한국에서 낳은 무국적 자녀인 반면, 가족분야의 연구는 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국적이 있는 아동들이다. 인권적 차원의 연구로는 미등록 이주아동문제를 체류자격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김성천, 2010 ; 장혜림 · 김성천, 2009),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시민적 접근보다는 인권적으로 접근하여 사회권을 부여하자는 연구(강현아, 2009), 미등록이주아동이 불안한 인권보장문제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장진숙, 2011),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타자화를 경계하며 인권적 접근을 원하는 연구(이민경 · 김경근, 2012)가 있다. ‘불법’이주민 가족에 대한 연구는 본국의 합법적 지위와 한국에서의 불법적 지위를 오가며 합법성과 인정이 일치되는 공간을 만나기 위해 소속을 연기하는 십대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민가영, 2009)와 부모가 이주노동을 떠나면서 떨어져 살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서 부모와 재결합하여 살고 있는 자녀들의 이야기(박혜준, 2008)가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가 이주연구가 여성과 아동, 가족 등 각기 다른 범주로 논의되면서, 초국적 가족이나 글로벌 가구는 미등록이주여성들이 로컬에서 만들고 유지하는 가족을 해석하는데 충분치 않다. 이들의 로컬 가족은 이주국이 허용하지 않으며, 본국의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도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만들어진 가족유지를 위한 이주여성의 전략이 아니라, 이주과정에서 이들이 주체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가족에 집중한다. 이들 가족은 각자 노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고 가사노동을 공유하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가구는 결혼이나 혈연과 같이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승인된 가족의 엄격성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공유하거나 계약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따라서 가구는 “구성원끼리 함께 수입을 벌어들이고 노동을 공유하는” 경제적 단위를 넘어, 가구구성원의 무급 및 유급 노동과 자원의 공유를 통한 일상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고용을 위해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회와경제의 기본단위가 된다(Douglass, 2010b). 글로벌 가구나 초국적 가족 구조가 구성원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만든 개별 가구들의 노력에 의해 유지된다면, 이 글은 이주국이 만든 법의 틈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이주국 로컬에서 형성한 가구의 일상적 유지 및 세대간 연결성을 유지하려는 과정을 가구화로 규정한다. 사회적 재생산의 지속적 과정으로써 가구화를 실천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가구안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녀의 귀환시기와 사회화 장소는 수입최대화를 위한 노동시간 확보, 가구유지를 위한 친밀성의 확보, 그리고 계급상승을 위한 자녀교육이라는 다층적 맥락에서 결정된다. 미등록이주여성이 자녀귀환을 결정하는 과정을 가구화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이주 지형에서 가족의 틀을 재사유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Ⅲ.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이주아동의 귀환을 결정하는 이주여성의 맥락을 가구화로 분석한다. 시민적 권리를 갖지 못한 미등록이주여성이 자녀의 교육 및 양육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맥락을 가구화의 관점에서 짚어보는 것이다. 연구의 기초자료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이다. 참여관찰은 2세부터 7세까지 미등록이주아동이 속해있는 A공단 B보육실에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고, 이들 아동의 어머니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⁴⁾. 이주아동들의 목소리를 참조하기 위해 A공단에서 10여 년간 성장한 10대 중학생과 20대 초 남매의 심층면접도 추가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경기도 A공단에 거주하고 있다. A공단은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낮은 임금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영세 가구공장 및 사양화되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들이 밀집된 곳이다. 원래 한센인들이 농업과 축산업으로 자립적 공동체를 이뤄살던 A공단은 인근지역이 상수도보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가축사육이 금지되자, 축사를 공장으로 개조하면서 공장들이 들어와 만들어졌다. 한센인들의 집단거주지로 알려져 인근 주민 및 행정당국이 출입을 꺼리면서, 싼 임대료와 행정당국의 관리소홀이 영세가구제조업체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동한 셈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는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A공단은 국내 대표적인 가구공단 가운데 하나로 성장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호황기에 1500여명에 이르던 이주민은 2000년대 들어 심해진 단속과 추방으로 급격히 감소해 현재는 약 700여명까지 줄었다는 게 지역민들의 추측이다.

연구참여자들은 A공단에서 이주민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단체가 운영하는 B보육실에

4) 사실 연구의 시작은 2012년 1월로 볼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교육과학기술부기초연구지원_사회과학지정주제지원사업, NRF-2010-328-B00050, 연구책임자김현미)에 보조원으로 참여하면서 연구자는 2012년 1월부터 참여관찰을 시작했다.

자녀를 보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이다. B보육실은 지역에서 출생한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해 이주민지원단체에 의해 2006년에 시작되어,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영아반은 2세부터 4세까지, 유아반은 5세부터 7세까지지만,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영아반 인원이 많은 경우 나이가 많은 순으로 유아반에 올라가는 식이다. 참여관찰은 유아반에서 보육실의 보조교사로 한글교육부터 식사 및 배변 등 보육실 활동과 통학버스차량 운행 보조 및 병원 데리고 가기 등의 활동 등 엄마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관찰은 ‘불법’이라는 법적 지위가 성인에게 부여하는 생활세계에 대한 감각이 아이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어린이들의 세계는 본인이 직접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과 함께 가장 밀접하고 자주 만나는 부모와 친구들, 그리고 보육실 교사들을 통해 구성된다. 부모와 함께 있는 밤시간의 경험과 보육실교사와 함께 있는 낮시간의 경험, 부모와 함께하는 집과 A공단의 느낌과 보육실 교사와 함께하는 보육실과 A공단의 느낌은 차이를 제공한다. 아이들이 상상하는 부모의 본국과 자신이 본국이라고 믿고 있는 한국에는 경계가 있다. 부모들이 갖고 있는 본국과 가족에 대한 느낌은, 이야기와 전화, 그리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만 상상하는 아이들의 것과 다르다. 아이들은 부모의 본국을 자신의 나라로 상상할 것을 교육받지만, 매일 보육실에서 진행되는 한국적 교육과 양육, 한국 미디어와 책, 한국어와 사회활동을 통해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보육실에 방문자가 올 때마다. 아이들은 외모에 의해 ‘어느 나라아이예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아이들은 부모의 나라를 대답하게 된다.

심층면접은 야근이 없는 저녁이나 주말에 이주여성의 집에서 이뤄졌고 각 면접은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면접은 1회에서 3회까지 다양하다. 21살의 누나와 15세 남동생 남매 면접은 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표1〉 연구참여자

순서	이름	국적(성)	나이	입국 년도	직업	자녀출생지				본국 보낸 자녀
						전파트너		현파트너		
						본국	한국	본국	한국	
1	카니즈	방글라데시(여)	30	2009	무늬목 ⁵⁾				1	
2	소냐	방글라데시(여)	29	2002	샌딩 ⁶⁾				2	
3	헬렌	필리핀(여)	37	2002	샌딩		1		1	
4	에이미	필리핀(여)	32	2008	샌딩			2	1	
5	엘리사	필리핀(여)	44	1997	샌딩	1			1	
6	앤	필리핀(여)	44	2007	신발	1			1	
7	벨라	필리핀(여)	38	2008	신발	2			1	
8	베티	필리핀(여)	43	2000	샌딩	2			1	1
9	브렌다	필리핀(여)	39	1997	샌딩				2	1
10	캐롤라인	필리핀(여)	31	2009	샌딩	3			1	
11	메가와티	인도네시아(여)	26	2007	신발		1		1	
12	클로이	필리핀(여)	29	2009	샌딩				1	1
13	도리스	필리핀(여)	37	2006	신발				1	
14	헤더	필리핀(여)	42	1995	신발	1			1	
15	아니타	네팔(여)	34	2004	샌딩				1	
16	이자벨	필리핀(여)	36	2000	샌딩		1		1	
17	푸슈파	방글라데시(여)	29	2002	샌딩/무늬목				1	
18	줄리아	필리핀(여)	40	2002	샌딩				1	
19	수니타	네팔(여)	29	2008	샌딩				1	
20	로라	필리핀(여)	32	2006	신발				2	1
21	니콜	필리핀(여)	31	2000	신발				1	1
22	레즐리	필리핀(여)	28	2010	신발	1				
23	찬티베	베트남(여)	29	2006	샌딩		1			
24	라보니	방글라데시(여)	21	2002	바리스타					
25	베콤	방글라데시(남)	15	2002	학생					

5) '무늬목'은 가구제조공정의 한 과정이다. 합판을 원목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나무결무늬의 얇은 판을 합판에 본드로 붙이는 작업이다.

6) '샌딩'은 가구제조공정의 한 과정이다. 합판이나 원목에 난 흠집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다. A공단에서 샌딩보다 '빠빠'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IV.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접근

미등록이주민의 자녀는 태어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체류지위를 갖는다. 이는 아무런 시민적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등록이주아동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 전에 부모의 나라에 보내진다. 일부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단속되어 추방되기도 한다.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가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더라도 미등록 혹은 무국적 상태의 이주 2세대 아동은 의료권, 교육권, 사회권 등을 갖지 못하고, 아동이 자신의 국가라고 믿는 곳에서 부모와 함께 살 체류권은 보장되지 않는다(이란주,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보육실 영아반에 8명, 유아반에는 8명의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은 낮에는 보육실에서 밤에는 일터에서 돌아온 부모와 함께 지낸다. 부모는 미등록이주민으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단기순환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을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노동자 자녀에게도 어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설동훈 외, 2003; 국가인권위원회, 2010). 외국인 자녀가 출생할 경우, 출신국의 대사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녀를 등록해야 하지만, 부모가 미등록인 경우, 단속에 대한 두려움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막고, 자녀는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아 미등록이 된다. 한편 부모 출신국의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못한 아동은 무국적이 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미등록 혹은 무국적의 아이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사회화를 위한 보육 및 교육은 접근하기 어려운 권리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국내법을 앞세우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시민적 권리를 보장할 모국은 없으며 가장 확실한 권리는 오직 가족, 부모를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강현아, 2009). 따라서 부모가 맺는 사회적 관계는 중요해진다. 부모가 로컬과 맺고 있는 자원 및 네트워크의 질과 양은 미등록이주아동의 생존과 양육의 실질적 양분이 된다.

평상시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미등록이주여성이 병원 및 의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임신과 함께이다. 정기검진비용뿐만 아니라 출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공제기를 운영하고 이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한다.

7)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상태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주민과 자녀에게 의료서비스 지원하는 민간적 차원의 대안적 의료안전망으로 가입비 만원을 내고 매달 6천원을 정기납입하면 의료공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지원단체 및 병원들의 도움으로 출산을 하고나서도, 일을 해야하는 이주여성들은 자녀를 본국으로 보내곤 했다. 그러나 2006년 보육실이 생기면서 본국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겠다는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2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줄리아씨는 2005년 케빈을 낳아 혼자 양육하고 있다. 연인관계가 아니었던 아이의 아빠가 떠나면서,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은 줄리아씨 혼자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아이를 원했어요. 아주 친절하고 건강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임신했을 때 외롭고 화나고 그랬어요. 스스로 나를 돌봐야했어요. 미역을 먹고 콜라도 안마시고 커피도 안마시고 나는 일이 끝나면 잠을 많이 자고 혼자여서, 그래서 공장은 도와줬어요. 내가 임신했을 때, 점심시간에 30분의 기도시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한국어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모님도 돈을 줘서 병원에 가게 해줬어요.(필리핀, 줄리아)

줄리아씨가 임신 7개월까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틈틈이 잠을 잘 휴식시간과 병원비를 주었던 공장주의 부인이었고, 출산비용은 이주민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출산 2달 만에 공장에 돌아가면서 아이가 문제가 되었지만, 필리핀에 보낼 수는 없었다. 2005년에는 보육실이 생기기 전이었고, 필리핀에서도 마땅히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들을 보내고 빨리 돈을 벌려고 했지만, 교사였던 어머니는 줄리아씨에게 아들을 혼자 필리핀에 보내지 말고 직접 키울 것을 충고했다. 부모의 훈육과 애정이 없이 돈과 선물로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에 대한 염려였다(박경태, 2001).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을 데려가 키워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들은 엄마가 필요하다고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지 않고 내가 키웠어요. 엄마는 도덕성이 높아요(high moral). 엄마는 사람은 엄마를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고 믿어요. 엄마가 좋아야 사람도 좋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고 키웠어요. 스스로 희생을 했죠. 아들이 2달이 되었을 때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다른 아이가 있어서. 제인. 그 엄마가 일을 안해서 내 아이를 돌봐줬어요. 아침에 아들을 거기로 데려갔어요. 5달을 그렇게 했어요. 보육실이 문을 열어서 아이를 거기로 보냈어요.(필리핀, 줄리아)

그러나 일하며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돈을 벌어야했던 줄리아씨는 출산 2개월 후부터 케빈을 친구에게 맡기고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파트너가 있던 친구는 출산 후,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줄리아씨는 약간의 돈을 주고 케빈을 맡길 수 있었고, 보육실이 생긴 후부터는 보육실에 케빈을 보낼 수 있었다. 보육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주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병원이용과 비용이다. 보육실 아이들은 유독 감기에 자주 걸렸다. 가구를 만드는데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이라는 것이 이곳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주장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없지만,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은 가구를 자를 때 혹은 사포질 때 나오는 미세한 먼지들과 도장 때 발생하는 미세 페인트입자들 때문에 자주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곤 한다. 공장 옥상에 지어진 임시가옥에 사는 아이들이 감기나 피부염에 노출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참여관찰 당시, 아이들은 늘 코감기와 목감기를 달고 살았고,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아이도 많았다. 감기는 병원에 가서 약을 받으면 상태가 호전되곤 했지만, 피부염을 달랐다. 아이들의 얼굴이나 몸은 긁어서 생채기가 끊이지 않았다. 참여관찰 당시 가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보육실에 비치된 아토피연고를 발라주긴 했지만, 임시적일뿐 자면서 생긴 상처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제일 불편하게 그거예요. 병원에 갔다 오면. 하시나는 1만 3천원인데 한국아이는 3천원이에요. 여기 살면 감기 잘 걸려요. 우리는 참을 수 있는데 아기는 안그래요. 병원비가 제일 불만이에요.(방글라데시, 카니즈)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진찰비와 약값은 보통 한국아이의 세배가 된다. 진료비가 만원이 넘고 약값도 만원이 넘는다. 한번 병원에 가면 드는 기초비용은 2만5천원에서 3만원이 된다. 여기에 병원에 오고가는 택시비까지 합하면 4만원가량 드는 셈이다. 엄마들의 사정을 알게 된 보육실에서는 장염처럼 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해 병원방문을 한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아픈 아이들 2, 3명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다. 매주 병원에 가는 것이 정례화되면서, 보육실에서는 근처의 소아과병원과 약국에 아이들 사정을 이야기한 후, 한국아이들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를 얻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보육교사들은 여러 병원에 문의를 한 후에야, 진료비와 약값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보육실교사들이 선의로 시작한 병원 데리고 가기가 일 년이 지나면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행정업무나 청소를 해야 하는 아이들 낮잠시간에 보육교사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이들의 퇴근은 늦어졌다. 미등록이주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부모와 이웃, 지역의 선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이었다. 부모들이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도움을 준 것도 바로 이주민지원단체였다. 단체의 도움과 초등학교 교장의 승낙으로 케빈과 라키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2013년 A공단 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은 케빈과 라키였다. 그러나 2013년 6월 라키가 엄마와 함께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서, 학교에는 케빈만 남게 되었다.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약혼자를 따라, 2002년 한국에

와 두 딸을 낳은 소녀씨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딸들을 양육하려 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딸이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라키는 우리 합법있으면 우리 안가도 되는데 불법이니까 꼭 가야돼요. 우리 비자 받으면 진짜 한국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키도 우리나라에 못가요 못간다고 한국에 살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비자가 없어서 라키 방글라가야 해요. 교육문제 때문에 비자있으면 우리 라키도 한국에 살아요 상관없어요. 학교 보내도 상관없는데, 비자문제예요. 다문제지. 비자받으면 좋겠어요. 애기들도 학교 보낼 수 있는데 지금도 안되잖아요. 라키 보낼 수 밖에 없어요.(방글라데시, 소녀)

2년 전에도 소녀씨는 남편을 두고, 딸들과 귀환을 생각했었다. 둘째를 임신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에 머누는 것은 생활비의 증가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자 한국을 좋아하는 라키가 병이 났고, 소녀씨 부부는 귀환을 연기했다. 그러나 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불예측적인 단속에 아이를 노출하는 것이고,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운 좋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웃들의 선의에 의해 아이가 병원에 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02년 A공단에 와서, 201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라보니는 요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했는데, 라보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비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뭐 고등학교, 제가 비자이야기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게 머리에 들어왔어요. 중학교를 어떻게 가야하는지 중학교 넘어가면 고등학교 가야하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괜찮았어요. 누가 비자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 없고 학생의 신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심리로 말하면 너무 뭐랄까 슬럼프예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왜냐면 제 또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취직을 했거나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꿈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도 못가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제가 방글라에 들어간다고 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낮고, 너무 불안하고 고민되고 그냥 마음이 막혀있는 머리로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함.(방글라데시, 라보니)

라보니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학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방글라데시에 가서 비자를 받아온대도, 엄마가 버는 월급으로 대학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른 한국친구들처럼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해결되었다. 피부색과 다른 생김새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유의 활발함과 명민함으로 성적이나 친구관계, 학교생활도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제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엄마처럼 공장에 가서 사포를 할 수도 없다. 아빠가 있는 방글라데시에 안가고 십 여 년을 한국에서 공부한 후에 하는 일이 고작 가구공장일이나고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아 걱정스럽다. 사실 라보니는 자신이 공장에서 엄마나 다른 방글라데시여성들처럼 일한다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공단 밖에서 직업을 갖는 것도 단속이나 신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한계를 실감한다. ‘불법’신분의 자신과 학교라는 공적공간에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 이웃들과 지역사회의 도움이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우물안 개구리”였던 자신에게 한숨이 날 뿐이다. 법적 체류 지위에 따라 교육, 의료, 일상적 삶, 직업과 미래까지 사회적 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셈이다(안경주, 2013).

뭘 해도 안되는 상태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딱히 청소년기 때나 그럴 때는 사람들 많은 꿈을 꾸고 의사가 되고 싶다 해도 나중에 다른 직업을 갖게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모르기 때문이고, 무슨 꿈을 꾀야할지 모르겠고, 뭘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방글라데시, 라보니)

라보니는 갑자기 무엇을 해야할 지 생활의 방향을 잃은 후, 10여년을 산 한국이 자신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익숙한 길들, 냄새, 다들 알고 지내는 이웃들, 변한 건 없지만, 미등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장애가 되는지 실감했다. 라보니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A공단에 들어와 여기서 자라서 공부하고 꿈을 키웠다. 아빠가 단속되어 추방되었고, 그 후로도 많은 이웃들이 단속되어 한국을 떠났다. 라보니는 마치 단속되어 추방되기 직전, 보호소에 갇혀있는 상황에 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년 동안 “계속 길이 생기겠지, 비자 받을 기회가 있겠지”하고 기대를 가졌었지만, 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라보니는 학생이라는 신분과 학교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었다. A공단에서 이주민들이 단속되어 추방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고 언제 자신에게도 닥칠 일이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당장의 일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라보니는 자신을 규정해줄 소속도 신분도 없다. 미등록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불법’이주여성이라는 불안한 신분이 전부이다. 공단에서 보낸 10년 동안 바뀐 것은 없고, 여전히 자신의 삶이 선의와 호혜에 기대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이다.

V. 수입의 최대화와 노동시간 확보

경제적 이유로 필리핀 출신의 클로이씨는 2살 된 아들을 2013년 5월에 파트너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정식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중인 클로이씨 부부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5년 동안 돈을 저축해 아들과 함께 클로이씨가 먼저 돌아가고 일 년 후, 남편이 귀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자주 감기에 걸리면서 클로이씨는 양육과 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귀환을 늦추는 거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필리핀에 있는 시부모가 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육적, 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적임을 깨달았다.

우리의 계획은 다니엘이 학교에 가면 내가 필리핀에 가고 일 년 뒤에 남편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계획보다) 일찍 보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너무 힘들어요. 다니엘이 아프면 난 일을 못가고 애를 데리고 병원가고 애를 돌봐야 해요. 내가 집에 가면 피곤해요. 그리고 남편은 요리하고 나는 다니엘을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니엘 샤워하고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일해요. 너무 힘들어요. 필리핀에서는 내 아이와 시엄마가 잘 지낼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한 달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매달 음식, 아이 것, 전기, 물 등 너무 비싸서 많이 저축할 수 없어요.(필리핀, 클로이)

다니엘이 자주 감기에 걸리면서 클로이씨는 병원방문을 위해 결근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 당연히 월급이 깎이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월차나 연차가 없고, 하루 결근에 삼일치의 일당이 깎는 규칙 때문이다. 영세자본을 바탕으로 사양화 길을 걷고 있는 제조업이 유일하게 기밀 노동력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미등록이주민이다. 공장주에게 노동자의 하루 결근은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월매출과 직결된다. 아이가 아파 부모 가운데 한명이 하루 결근을 할 경우, 진찰비와 약값, 왕복택시비가 들고, 삼일치의 일당이 삭감된다. 아이가 아프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당이 싼 엄마가 보통 결근을 한다. 따라서 클로이씨가 하루 결근을 하면, 하루 일당 3만5천원으로 계산해, 월급에서 10만 5천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즉 아이가 아파 엄마가 하루 결근을 하게 되면, 의료비용으로 4만원이 지출되고, 한 달 가구수입은 최소 10만 5천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결석횟수는 높아지게 되고, 가구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가구수입의 최대화 측면에서 아이의 귀환은 결정되기도 한다.

반면에 본국에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 아이를 양육하고 수입의 최대화함으로써 가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구구성원은 노동시간 및 가사노동의 배분을 재협상한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임신으로 일을 그만두면, 가구수입은 줄게 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남편은 야근과 주말특근을 늘리던지 혹은 더 어려운 일을 담당함으로써 급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남성이 노동시간을 늘리고 위험한 일을 담당하면서 가구수입을 유지하면, 여성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가구를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한다. 카니즈씨는 임신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줄어든 수입을 메꾸기 위해 남편은 야근과 주말특근을 늘렸다. 출산을 한 후에는 보육실에서 돌아온 하시나를 카니즈씨가 돌보면서 가사일을 도맡은 반면, 야근을 할 수 없는 부인을 대신해 남편은 밤 열한시까지 야근을 한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가사노동을 재분담함으로써, 카니즈씨 가구는 수입을 유지하면서 딸을 본국에 보낼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엄마가 가사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남성의 노동시간을 확보해주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가 있다. 푸슈파씨는 야근과 주말특근을 도맡아 하고 반대로 남편이 저녁에 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한다. 수입을 최대화하면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로컬에서 형성한 가구를 유지하기 위해 가구원들이 벌이는 협상이다. 따라서 가구는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와 젠더불평등이 그대로 수용되는 장소가 아니다. 가구재생산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에서 여성들은 남성파트너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그리고 임금노동의 배분을 재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수입을 벌어들이는 가구원 가운데 한사람이 단속되면, 가구재생산은 어려움에 처한다. 엄마가 단속되어 추방될 경우,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 본국에 보내진다. 이런 경우, 아빠는 남아서 노동을 해서 본국으로 귀환한 가족에게 송금을 통해 가구를 유지한다. 그러나 남편이 단속에 걸려 추방당한 경우, 가구유지는 어려움에 처한다. 아이와 함께 남게 된 여성들은 노동과 양육을 혼자서 담당해야한다. 따라서 밤시간에 아이를 돌봐야하는 여성의 야근은 불가능하고 주말특근도 어렵게 된다. 당연히 가구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주노동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저축이 불가능해지고, 가구유지가 어렵게 되면 여성들은 남편을 따라 귀환을 고민하게 된다. 네팔출신의 프리사마씨는 2012년 5월 남편이 단속으로 추방당한 뒤, 혼자서 딸과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딸이 태어난 이후, 남편이 저녁시간에 집안일과 아이를 책임지면서 프리사마씨는 야근과 주말특근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었다. 그러나 프리사마씨의 노동시간을 확보해 줄 남편이 단속되면서 노동시간과 수입은 함께 줄었다. 집임대료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아이보육실 비, 전화비, 식료품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은 프리사마씨는 귀환을 결정하고 2012년 11월 딸과 함께 네팔로 돌아갔다. 미등록이주여성이 로컬에서 형성한 가구는 노동에 따른 현금수입에 의해 유지되고, 현금수입의 양은 노동시간과 비례한다. 따라서 자녀의 귀환은 가구수입을 이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녀양육을 공유함으로써 노동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Ⅵ. 적소선택의 딜레마

(1) 교육과 계급상승

모든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A공단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자신을 둘러싼 부모와 사물, 장소에 대한 강한 믿음과 애착을 갖는다. 믿음과 애착은 한국사회로 확장되고 곧 한국사회에 대한 귀속감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단속으로 부모나 친구, 삼촌, 이웃들이 인사도 없이 추방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온전히 한국에 속해있지 않다는 것을 어렵듯이 인식하게 된다. 귀속의 내용에서 법적지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등록이주여성의 고민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임신을 출산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서 키울 것인가? 단속위험이 있지만, 아이를 공단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것인가? 아니면 단속의 불안이 없지만 엄마가 없는 다른 나라로 보낼 것인가? 등 자녀의 “사회화의 적소”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엄마의 고민은 시작된다(전경수, 1994).

연구자가 만난 미등록이주여성들은 이주노동의 이유를 본국의 경제 사정이나 집안의 가난으로 보고, 형편이 나았다면 이주를 택하지 않았을거라고 말한다. 이주는 자발적이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박혜경·이재경, 2010). 부자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는 ‘운’을 갖고 있었다면, 어려서 품은 꿈을 키울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또 나라와 가족을 떠나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할 필요도,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배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녀가 꿈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저울질하며, 이주여성은 아이들의 사회화 장소를 선택한다. 아이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은 본국보다 한국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럴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메디컬테크놀로지를 전공한 도리스씨는 대학졸업 후, 전공과 관련 한 직업을 구했지만, 급여가 적었다. 다시 마사지를 1년 반 동안 배워 영국으로 가려했지만 실패하고 남동생이 있는 A공단에 왔다. 오자마자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딸을 낳았다. 도리스씨는 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줄 작정이다. 자신처럼 이주노동을 하지 않게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게 교육적 지원을 해주려한다. 불법인 딸이 한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필리핀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딸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지금 필리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일자리를 구해도, 필리핀의 급여로는 딸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딸의 교육을 위해 필리핀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지만,

딸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이주노동을 지속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학비가)너무 비싸요. 직업이 없으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도리스씨는 딸 스텔라가 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가까워지면서 혼란에 빠졌다. 현재 도리스씨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가족 셋이 다 함께 돌아간다. 둘째, 남편은 남아 일을 하고 도리스씨와 딸 스텔라만 돌아간다. 셋째, 도리스씨와 남편은 함께 남아 일을 하고, 딸 스텔라만 필리핀의 할머니에게 보낸다. 스텔라의 교육만 생각하면 온 가족이 함께 당장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도리스씨와 스텔라가 돌아가는 방법은 도리스씨가 원하지 않는다. 부인과 아이들이 돌아간 뒤, 남성들이 혼자 남아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많이 보았고, 헤어지는 부부도 보았기 때문이다(이혜경 외, 2006; 김민정, 2012). “다른 아이를 갖고, 외롭고 힘드니까 술을 마시고 의지하게 되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가 이유이다. 한편 스텔라만 필리핀으로 보내는 방법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스텔라의 귀환을 미루고 있지만, 결국 도리스씨 가족은 가구의 분리를 결정해야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제 생각에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한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는 내가 돌보고 싶어요. 아이들에 대해 책임감이 있어요. 돈보다 아이들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아이들은 나쁜 일을 해요. 엄마가 없으니까.(필리핀, 도리스)

이주민들은 자녀들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위해 이주노동을 한다. 네팔 출신의 아니타씨는 2004년 한국에 왔다 친구의 소개로 2006년 남편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딸을 낳았다. 한국에 정도 들어 떠나기 싫지만, 2014년에 교육을 위해 네팔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미 카투만두에 4층짜리 집을 마련해 이주목적을 달성했지만, 돌아가면 종교가 다른 시부모와의 갈등이 예상돼 귀환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아니타씨는 자신의 자유보다 딸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힘든 이주노동을 하는 이유를 “날라리”처럼 놀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공부안해서 지금 뼈빠하잖아요. 싫어요. 제니는 잘할거예요. 엄마도 매일 이야기해요. 너만 공부안하고, 제 잘못이잖아요. 애는 공부해야잖아요. 늦었어. 저도 내년에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해야해요. 우리는 세 살부터 가야해요. ABC도 모르면 나중에 어떡해요. 공부잘하고, 우리처럼 안되면 좋아. 우리처럼 일안하고 의사처럼. 저는 네팔말구요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네팔, 아니타)

아니타씨의 꿈은 딸이 공부를 잘해 의사가 되는 것이다. 네팔 여건은 대학을 나와도 일을 구하기 어렵고, 설혹 직장을 잡아도 적은 급여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을 떠난다.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다시 한국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재이주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딸이 전문직인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에서 딸을 공부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타씨 부부가 귀환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다. 딸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는 돈을 더 모을 생각이다. 이주민들은 자녀들이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려하고, 그러기 위해 일을 한다. 자신들이 자원부족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했기에, 자녀들에게는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줌으로써 꿈 실현에 가까이 갈 말판을 마련해주고 싶어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공단에서 노동은 필요한데, 자녀 교육의 수월성과 연결성을 위해서는 본국에 돌아가야 한다. 자녀에 대한 교육적 열망이 큰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특정한 목표가 있는 이주여성은 자신의 이주목표 가운데 하나를 자녀의 교육으로 놓고 귀환시기를 결정한다(조은, 2008).

(2) 삶의 질과 글로벌 인재

적절한 교육과 양육환경에 대한 고민이외에도 삶의 질은 자녀와의 동거냐 별거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푸슈파씨는 아들 샤프라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했다. 교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푸슈파씨는 한국이 방글라데시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살면 누리기 힘든 좋은 기후와 깨끗한 공기와 물, 언제나 들어오는 전기가 있는 한국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살기를 원한다.

내 고향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강에서 물하고 샤워하고 그래요. 그러면 방도 이런 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샤프라는 살 수 없어요. 지금 물 집 앞에 나와요. 두 달 있다가 나와요.(우기요?)네. 두 달 있어요. 고향에는 강물이 집 앞에 나와요. 또 다른 물이 흘러나와요. 집까지 와요. 조금도 (방글라데시에)안가고 싶어요. 한국이 좋아요. 다 좋아요. 날씨가 추운데 그래요. 돈도 나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많이 안더워요. 먼지도 없고, 우리나라는 전기도 한 시간 나와요 한 시간 안나와요. 물도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먹는 것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키드니하고 다 나빠요. 먹는 것 때문에.(방글라데시, 푸슈파)

푸슈파씨와 샤프라는 2013년 7월에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 2013년 5월에 푸슈파씨의

공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쳐 공장에서 일하던 6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모두 잡아갔다. 남편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푸슈파씨도 남편과 함께 잡혔다. 남편은 단속 일주일 만에 방글라데시로 추방되었다. 다행히 푸슈파씨는 어린 아들이 있어, 아들을 데리고 떠난다는 조건으로 출입국에서 풀려났다. 2개월 후, 푸슈파씨는 샤프라와 함께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서, 샤프라가 당분간 먹을 한국음식이 담긴 짐 10킬로짜리 19개를 가져갔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음식에 익숙한 아이들이 부모의 본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시 적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샤프라보다 한 달 먼저 돌아가 라키네 짐은 된장과 고추장, 김으로 채워졌었다.

A공단에서 태어났거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이주아동은 부모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은 없다. 어떻게 생긴 집에서 누구와 놀며 지낼 지에 대한 구체적 경험도 없다. 날씨나 먹는 것에 대한 몸의 감각도 없다.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길들여진 한국의 냄새와 맛, 기후에 대해 몸으로 알고 있지만, 부모들이 말하는 앞으로 자기가 살아야 할 나라에 대한 구체적 감각은 없다(김현미, 2014). 아이들은 자신이 한국사람이 아니란 것은 알지만, 왜 자기가 한국사람이 아니며 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부모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A공단에서 만난 이주여성들은 자녀의 교육에 유독 신경을 쓰고 있었다. 여성들의 모든 계획은 아이들의 교육일정에 맞춰있는 듯 보였다. 아이들의 귀환시기는 초등학교에 갈 시기로 정해져있었고(물론 그것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지만), 투자의 일부는 아이들 교육보험에 들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A공단에서 출산한 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할수록 귀환에 대한 압박을 느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본국에서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갈 나이를 귀환시점으로 잡는다. A공단에 7살 이상의 어린이가 거의 없는 이유가 단속도 있지만, 교육 때문에 본국에 보내지는 게 더 많다. 이주민들은 자녀 나이가 4, 5살이 되면 자신의 본국에 보낸다. 교육,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한국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생활비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단속에 대해 자기 몸조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어의 습득이 아이에게 자원이 된다는 관점에서 귀환일정이 조정되기도 한다.

마이주라부모는 언어가 능력이자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부부는 “마이주라가 여기서 공부할 기회를 갖는다면 필리핀에 가서 한국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필리핀에 한국사람이 많아서 타갈로그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깐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마이주라가 계속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부모가 일을 마치고 온 저녁, 가정 내에서 모어가 사용되지만, 하루 낮시간을 보내는 보육실에서는 한국어가 사용되고 사회화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A공단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본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자부심, 이중적 감정을 경험하며 표현한다. 부모들은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자녀가 보육실에 잘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보다 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부모들은 보육실에서 전달사항이나 자신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어린 자녀가 통역해줄 때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신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미래에 본국에 돌아갔을 때의 교육과 직결된다. 아이들이 본국에 가서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예요.” 이런 이중의 감정은 아무리 가정에서 본국어를 가르쳐도 본국어의 사용횟수와 재생의 효과성에서 낮시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이다.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나아질수록, 부모는 아이와의 소통에 피로를 느낀다. 부인과 달리 한국말을 잘 못하는 모한씨는 제니가 “이제 한국말 나보다 잘해”라며 부끄러워 한다. 일터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진 않던 언어가 딸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모한씨는 최근에 부인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스텔라도 마찬가지다. 도리스씨 부부가 딸에게 매일 타갈로그어를 가르치지만 효과는 별로다. 타갈로그어를 가르치면 스텔라는 한국말로 대답을 한다. 타갈로그어를 알아듣지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스텔라가족도 한국말로 대화를 한다. 이런 상황은 유사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부모가 규칙적으로 모어를 가르치기는 힘들고, 낮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온 아이가 저녁시간에 부모의 말을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젠가 돌아가야한다는 압박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본국 언어를 가르치려 하지만, 쉽지 않다. 부모의 귀환 연기는 자녀의 모국어 결정도 연기하는 셈이다. 한국어가 자원이 될거라 믿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의 부모들은 자녀가 두 개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개인이 되기 바란다. 그러나 글로벌 개인,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완전히 습득하기 위해 귀환을 연기한다는 것은 귀환이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변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등록이주여성의 가구는 한국의 기러기가족이나 중국의 우주인가족(astronaut families)처럼 중 상위층 가족이 실천하는 계급재생산의 중요한 전략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지구적 별거와 다른 결을 갖는다(안경주, 2013). 자원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미등록이주민 가족의 귀환과 이산은 글로벌 시민권의 불가능성을 인식한 가운데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해석가능하다. 인터뷰에서 이주여성들은 한결같이 일, 이년 내에 아이의 교육 때문에 돌아가야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몇 명이 돌아갈지는 확신할 수 없다. 6살인 딸과 함께 귀환을 연기중인 앤씨는 “돈이 있다면 벌써 돌아갔을거예요. 3, 4살이면 벌써 학교에 가요. 마이주라는 너무 늦은 셈이에요.”라며 딸에게 미안해한다. 귀환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로 연기되는 앤씨와 딸의 귀환은 두 개의 언어습득이라는 글로벌 이동성의 차원에서 언어화되고 있다.

Ⅷ. 친밀성의 확보

초국적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본국에 남겨두고 국경을 넘어 이주했거나 혹은 나이든 부모나 다른 가족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국경을 넘는, 국경을 두고 떨어져 사는 가족을 말한다(Kristine M. and Norma S., 2012). 그러나 초국적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국경이라는 지리적 경계와 오랜 동안의 별거라는 시간적 거리를 넘어 하나의 가족느낌(familyhood)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협상을 하는 과정이다(Sigh, Robertson and Cabraal, 2012; Bacigalupe and Lambe, 2011). 특히 국경을 두고 가족구성원들의 삶이 이뤄지면서, 출생과 생활, 그리고 죽음의 장소가 일치할거라는 가능성이 침식되면서 가족관계와 느낌은 초국적 가족에게 중요해지고 있다(Singh and Cabraal, 2013).

A공단의 이주여성 상당수는 본국에 자녀를 놓고 왔거나 A공단에서 나온 자녀를 본국에 보낸 경우가 있다. 이들은 본국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 한다. 이런 감정은 현실이 허용하는 한 새로 낳은 자녀는 직접 키우려는 마음으로 전환된다.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브렌다씨는 A공단으로 온 이후 파트너를 만나 2001년 아들을 낳았다. IMF이후 적어진 일자리와 낮아진 임금 때문에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브렌다씨는 필리핀에 있는 파트너의 형수에게 아이를 보낸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매달 생활비와 교육비와 60만원을 보내는 부모보다 키워준 큰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브렌다씨 커플은 2010년에 낳은 딸은 필리핀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고 있다.

안보낼거예요. 내 생각에 옛날에 아기 키우고 싶었어. 그런데 IMF 때문에 힘들었어요. 2001년인데 여전히 힘들었어요. (둘째)애 낳았을 때 다른 아이들도 여기 있어서, 나도 키우고 싶어서 딸은 여기 있어.(필리핀, 브렌다)

이주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이주를 기획하고 실천했지만, 정작 가족역할이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재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 및 본국 가족들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Coe, 2011). 필리핀으로 보내진 자녀도, 한 번도 자신을 보러오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와의 별거가 길어질수록 남겨진 아이들은 “유기abandonment”의 감정으로 심리적·정서적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Parrenas, 2005). 가족은 친밀성과 일상의 행동을 공유하는 집단이지만,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송금과 선물, 전화로 부모의 사랑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 돈과 상품은

국경을 넘어 전달이 가능하지만 얼굴을 보고 등을 어루만져주는, 손길과 눈길은 인터넷과 전화로 전달되기 어렵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 간의 친밀성, 감정의 재생산은 어려움에 처한다. 본국의 자녀가 느끼는 외로움만큼, 이주여성의 외로움도 크다.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매달 송금하지만 자녀로부터 전달되는 사랑의 느낌은 예전 같지 않다. 보고 싶어 전화를 해도 아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더 중요시한다. 니콜씨는 2006년에 낳은 아들을 필리핀 엄마에게 보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들을 키우지 않고 보낸 게 후회스럽지만,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생일선물로 신발과 옷, 장남감을 보내다가 8살이 되면서 컴퓨터를 보내줬다. 아이와 화상채팅을 하려는 니콜씨부와 친구들과 컴퓨터 게임을 하려는 아들 사이에 종종 다툼이 생긴다. 아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 컴퓨터를 켜지만 아들은 귀찮아한다. 아들은 잠자야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엄마와의 채팅을 피곤해하는데, 니콜씨는 안타까울 뿐이다.

여기 병원에서 태어나서 한 달 안돼서 필리핀 보냈어요. 겨우 3주되어서, 아 마음이 아파요. 여기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 아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아이랑 연락은) 인터넷. 말 안들어요. 때로. 야간 없으면 (연락)해요. 일주일에 한번 (연락)해요. 야간 없어 전화하면, 아들은 ‘한 시간만해요! 빨리빨리해요! 나 잠자야해!’ 맨날 놀아요. 여기 채팅 싫어해요. ‘엄마 하지마. 매일 매일 채팅해.’(필리핀, 니콜)

특히 파트너와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이주여성에게 자녀는 중요한 의지가 된다.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파트너와 이별로 인한 친밀한 관계의 부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는 오히려 노동과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된다. 파트너와 헤어지고 혼자 딸을 키우는 벨라씨는 아이 때문에 장시간 노동과 모욕적인 차별은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모성은 가족을 유지하고 자녀의 계급상승을 위한 도구적 혹은 자녀를 위해 부부관계를 희생하는 모성이 아니다(조은 2008). 자녀보호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자녀양육을 자신의 생활세계에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이 된다(러디, 2002).

제시카아빠와 관계도 좋지 않아서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혼자서 하기로 결정했어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을 해야하고, 내 월급은 너무 작아요. 그러나 제시카를 필리핀으로 보내는 것을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전 혼자예요. 나는 혼자 살수 없었어요. 일이 힘들지만 집에 와서 제시카를 보면 행복해요. 제시카는 good girl이에요.(필리핀, 벨라)

자녀양육과 노동을 통해 가구를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이주여성은 의존자 혹은 희생자로만 남지 않는다. 이주여성은 남성파트너가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가사노동의 분담에 얽매이지 않는다. 파트너와의 결별 그리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개별적 주체로 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일상과 자녀의 양육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이주여성에게 자녀의 귀환은 곧 자신의 귀환을 의미한다. 딸을 보내는 순간 자신의 삶의 한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VIII. 결론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A공단에서 10년 이상 거주했고, 이들은 본국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가족이 너무 그리다’ ‘나라에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 갈거다’라는 것이 미래계획에 대한 한결같은 대답이다. 그러나 ‘언제 돌아갈거냐’라는 물음에는 ‘돈이 모이면’ 혹은 ‘돈만 있으면’으로 귀결된다. 이들의 귀환시기는 로컬에서 형성한 가구의 재생산이 본국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다. 성인 이주민의 귀환이 연기되고 유보되는 것과 상대적으로 자녀의 귀환시기는 협상되고 계획된다. 미등록이주아동의 귀환시기는 이주민이 로컬에서 형성한 가구화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지속하려고 하는 가구화는 자녀의 계급상승이나 가구의 자본축적이라는 자본주의적 가족이나 모성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서용순, 2012). 가구화는 오히려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와의 협상으로 볼 수 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의 자원과 가구 수입을 감소시키지 않는 노동시간의 확보, 자녀의 교육의 수월성 및 문화자본의 획득 여부, 그리고 친밀성의 확보 차원에서 저울질 된다. 즉 미등록이주아동의 사회화 장소 및 귀환시기의 결정은 현재의 삶을 안정화하고 삶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취하는 가구화의 맥락에서 이뤄진다.



- 강현아. 2009.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미국내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비교문화연구』 18(2),
-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 김민정. 2012. “필리핀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한국의 사례.” 『한국여성학』 28(2), 33-74
- 김성천. 2010.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7(1), 5-34.
- 김영옥 · 김현미. 2013. “글로벌 가구(Global Householding) 구성의 관점으로 본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가족.” 『젠더와 문화』 6(2),177-213.
-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서울: 돌베개.
- 더글라스, 마이크(2010), 전지구적 가구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 일본, 대만의 이주와 사회 변화에 관하여, 도시인문학연구2권1호:203-251
- 러덕,사라. 2002. “제1부 모성적 사유,” 『모성적 사유』, 이해정 옮김, 철학과 현실사
- 민가영. 2009. “트랜스 개념을 통한 저소득층 십대 이주여성의 반복적 이주에 관한 연구: 몽골 이주 노동자자녀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5-39.
- 박경태. 2001. “노동력 송출국에서 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 필리핀의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13, 26-48.
- 박혜경 · 이재경. 2010. “탈빈곤 전략으로서 이주결혼의 역설: 한국의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4), 33-62.
- 박혜준. 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문화』 20(1), 99-129.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07년 11월 통계월보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통계연보
- 서용순. 2012. “우리 시대의 사랑, 결혼, 가족.” 『철한논총』 67(1),165-187.
- 석원정. 2013.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5-48.
- 설동훈 외. 200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인권실태조사』, 국가 인권위원회
- 설동훈. 2007. “7장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현실과 권리 보호.” 이재연 외, 『아동과 권리』, 서울: 창지사.
- 안경주. 2013. “한국 가족주의와 트랜스 국가주의적 흡: 트랜스 국가주의적 사회적 장에서의 교육이주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6(1), 235-279
- 이란주. 2009. 『아빠, 제발 잡히지 마』. 서울: 삶이보이는 창.

- 이민경 · 김경근. 2012.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초국적 가족 형성과 경제적 정체성.” 『교육사회학』 22(2), 179-209.
- 이해원. 201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평가지표.” 『한국사회복지교육』 14, 125-148
- 장진숙. 2011. “이주아동의 법적지위와 인권 보장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10, 341-384.
- 장혜림 · 김성천. 2009.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과권리』 13(2), 203-225.
- 전경수. 1994. 『문화의 이해』. 서울:일지사.
-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24(2), 5-37,
- 최경옥. 2012.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아동의 교육권.” 『공법학연구』 13(1), 307-339.
- Castles, Stephen and Miller, Mark J. 2003. *The Age of Migration*. The Guilford Press.
- Coe, Cati. 2011. “What is the impact of transnational migration on family life: Women’s comparisons of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a small town in Ghana.” *Journal of the American Ethnological Society* 38(1), 148-163.
- Douglass, Michael. 2010. “Globalizing the household in east asia, Whitehead.” *Journal of Diplomacy & International Relations* 11(1), 61-77.
- Kristine M. Zentgraf & Norma Stoltz Chinchilla. 2012. “Transnational Family Separation: A framework for Analysi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8(2), 345-366.
- Parrenas, Rhacel Salazar. 2005. *Children of Global Migration - Transnational Families and Gendered Wo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Singh, Supriya, Robertson, Shanthi and Cabraal, Anuja. 2012. “Transnational family money: remittances, gifts and inheritance.”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3(5), 475-492.
- Bacigalupe, Gonzalo and Lambe, Susan. 2011. “Virtualizing Intimac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ransnational Families in Therapy.” *Family Process*, 50(1), 12-27.
- Singh, Supriya and Cabraal, Anuja. 2013. “Contested Representations of Remittances and the Transnational Family.”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36(1), 50-64.
- Yeoh, Brenda, S., Huang, Shirlena and Lam, Theodora. 2005. “Transnationalizing the ‘Asian’ Family: imaginaries, intimacies, and strategic intents.” *Global Networks* 5, 307-315.

A Householding Perspective on The Right Place for Undocumented Children

Yu, Yu Seon

(Yonsei University, The graduate Program in Culture and Gender Studies)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processes of the choice on the right place for the undocumented children from the householding point of view. Undocumented woman worker as a mother is trying to provide their children with the best condition of education and upbringing and in this context, the household becomes a social unit for social reproduction. Therefore, householding is the way to form families and sustain them in local. In terms of social reproduction,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is the one of the core interests in the household management. As the undocumented children inherit legal status from their parents and the childbirth is not connected to custody. It means that mother has to decide to raise children in the local or send them to her own nation for education, leaving their parents behind to work to finance them. The decision involved in undocumented children's return depends on the cost-efficiency, supremacy in education, and intimacy in family ties in the process of householding to integrate regular routine everyday life and socialize children so as to prepare unpredictable crack down. In that context, the mother keeps negotiating on the decision of children's return in terms of secure the working hours as a way of subsisting on fixed incomes, form family bonds, and promote social capital and so on.

<Key words> Undocumented children, Household, Householding, Undocumented, Transnational family